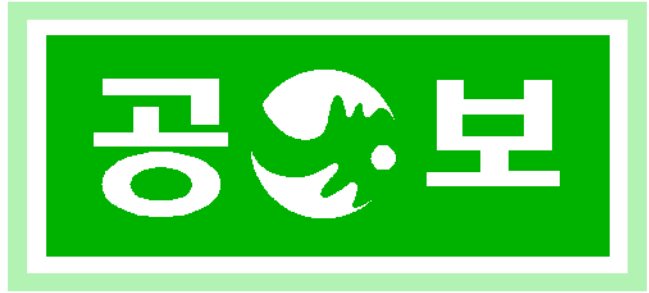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기 관 의 장



**제 680 호 2011. 2. 7(월)**

##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훈령 제16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 2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102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6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2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고발대상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각 부서책임자와 간시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

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갑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사불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중징자료에 의하여 횡령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분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고발장은 구청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행위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원은 고발한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상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시침」(1994년 제정)과 관련하여 공직사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명확한 고발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가.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 조치(제5조)
- 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제6조)
- 다.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제8조)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102호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1. 위탁운영 대상시설 및 업무**

시 설	위 치	정원	위탁업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1길 10-3 (양정동 484-51, 구 양정동주민센터 2층)	29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2. 위탁운영기간 : 개소일부터 3년****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가.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의법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 법인 제외

**4. 신청서류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1. 2. 7(월) ~ 2. 28(월)(22일간)  
 나. 접수기간 : 2011. 2. 22(화) ~ 2. 28(월)(7일간)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  
 다. 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2011. 2. 10(목) 14:00,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1길 10-3  
 (양정동 484-51, 구 양정동주민센터 2층)  
 ○ 주요내용 : 시책개요, 위탁시책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 법인이 감  
 라.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이청아동팀(울산광역시북구청 4층)  
 바. 접수방법 : 대표자(위임받은 자) 또는 시설장 내정자 방문 제출  
 ※ 접수시간은 공무원업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5. 신청서류**

- 가.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진흥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
  - 나.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기부 등본
  - 다.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라. 법인 자산관련 인증서류 또는 최근 법인 재무제표
    - 구공산(등기부등본), 등산(정기예금성 예금잔 인정)
    - 공고인 진인 현재 잔액증명
  - 과. 운영체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전문성 입증자료
  - 마. 시설장(내정자)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전문성 입증자료
  - 바.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서 및 2011년 예산서
- ※ 신청서류는 지역아동센터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양면  
제본(좌권)하여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6.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세 및 시설상 사업수행 능력(30),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35), 운영체의 재정능력(1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10)

**7.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가. 결정방법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후 구청장 수탁자 결정
- 나.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주포동보) 울산광역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 등이 대한 소견을 발표  
(10분/프리젠테이션 가능) 하여야 하며 질의(10분)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자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발표자는 대표자, 수탁운영 시설장 내정자(신청서 기재된 시설장), 대표자  
로부터 위임받은 자
-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충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  
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편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 라. 관련 사항의 미숙자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수를 거부할 수 있음.
- 바. 제출서류 중 위분지참 서류의 위분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각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지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은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여성아동팀) 052-219-7343,7353 FAX 052-219-7359]



【신청서식】

<b>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b>		처리 기간 별도 문의
신청인	① 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설립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보육 시설 의 상 세 요	성명 주소 ⑦ 주민등록번호 ⑧ 명칭 ⑨ 소재지	(전화: )     (전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 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기부 등본 2.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3. 법인 자산관련 입증서류 또는 최근 법인 재무제표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성기예규정 예규본 인성) - 광고업 전일 현재 잔액증명 4. 운영계획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청서 입증자료 5. 시설장(대정자)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전료성 입증자료 6.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서 및 2011년 예산서		수스료          없음

210mm×297mm